

##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02. 24.

### 하동군의회 의장 강대선

1. 조례명: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제안이유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어 의원발의 수를 규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 - 가. 의안의 제출·발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 (안 제6조)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##### 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star020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##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3조·제54조·제56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”를 “제53조·제54조·제56조”로 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한다) 제53조·제54조·제56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라 하동군의회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6조 (생 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3조·제54조·제5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6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</u></p> <p>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

##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“법”이라한다) 제53조·제54조·제56조에 따라 하동군의회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기일수)** ① 하동군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③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집회일)**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.

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

한다.

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집회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·재난 등으로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기운영)** 의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**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임시회에서는 발의·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, 군민의 의견 수렴·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6조(의안의 제출·발의)**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**제7조(준용규정)**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